

朝鮮時代 受職女真人에 대한 座次規定

- 『世宗·成宗實錄』 을 중심으로 -

韓成周 강원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머리말

太祖 李成桂는 조선 건국 후 자신에게 종군하였던 女真人 大小酋長에게 각각 千戶, 萬戶의 관직을 새로이 제수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왕조가 여진인에게 授職한 최초의 사례였다. 이 후 太宗, 世宗代를 거치면서 조선은 여진세력 및 對女眞關係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授職制度를 능동적으로 전개하여 세종대까지 여진인 총 190여 명에 대한 수직을 행하였다.¹⁾ 수직제도는 일종의 회유정책으로 여진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수직을 받은 여진인은 관직과 더불어 노비, 옷감 등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진인의 상당수는 조선에 회유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양자간의 필요에 의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진에 대한 수직제도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선에서는 여진에 대한 관직 수여와 함께 이들에 대한 待遇規定을 면밀히 갖추었는데 그 중 하나가 受職女真人에 대한 座席配置規定(이하 座次規定이라 약칭)이다.²⁾ 북방에 거주하던 여진인의 上京은 驛路를 따라 이루어졌는데 여진인이 왕래할 때는 여염집에서 자지 못하게 하고,³⁾ 지방에서는 官廝나 驛站에, 서울에서는 北平館에 머물게 하였다.⁴⁾ 그런데 이들이 상경하면 각 관사나 역참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접대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조선인 관료가 접견할 때의 좌석배치에 관한 몇 가지 사료가 『朝鮮王朝實錄』과 『經國大典』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여기에는 수직여진인의 관직명에 따른 좌차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대우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또한 세종대에 나타난 좌차규정에는 명의 관직을 받은 여진인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5세기 여진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

논문접수일 : 2006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 2006년 4월 15일

1) 조선은 女眞 勢力 및 對女眞關係의 변화에 따라 여진에게 강온양면의 정책을 구사하였으며, 吾都里의 童猛哥帖木兒의 죽음을 계기로 4郡 6鎮을 설치하였다. 또한 4군 6진의 설치 이후에는 항화한 여진인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수직정책을 두만강·압록강 거주 여진인 및 明朝의 관직을 보유한 여진인에게까지 확대하였다(한성주, 「조선조기 受職女真人 연구-세종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36, 2006).

2) 수직여진인에 대한 좌차규정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아직 연구된 바가 없고, 국외에서 Ken Robinson이 「朝鮮王朝-受職女真人의 關係と'朝鮮」이라는 논문에서 소략한 바가 있다.(Ken Robinson, 「朝鮮王朝-受職女真人의 關係と'朝鮮」, 『歷史評論』 592, 1999.) 그러나 Ken Robinson의 연구는 1442년과 1472년의 좌차규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한 정도여서 좌차규정의 내용과 분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經國大典』 禮典 待使客條.

4) 李炫熙, 「朝鮮王朝時代의 北平館 野人 二 綏撫策 一斑」, 『白山學報』 11, 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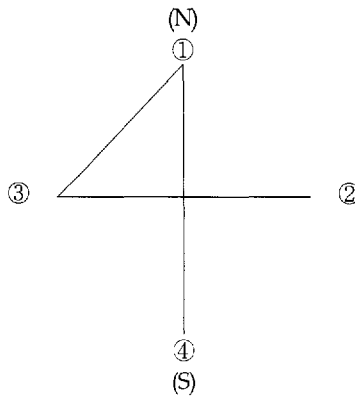
세 및 조선·명·여진관계의 성격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수직여진인에 대한 좌차규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진인의 좌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433년(세종 15)의 것이고, 두 번째는 1441년(세종 23)과 1442년(세종 24)의 것이다. 위의 두 개의 좌차규정은 세종대에 나타난 반면 세 번째의 좌차규정은 1472년(성종 3)과 『경국대전』의 것인데, 성종 3년과 경국대전의 내용은 동일하다.

본 논문은 조선시대 수직여진인의 좌차규정과 각 시기별 좌차특징을 상호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좌차규정의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수직여진인에 대한 대우의 일면을 살펴봄과 동시에 15세기 요동을 둘러싼 명·조선·여진의 관계 변화가 좌차규정의 내용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도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1. 座次規定에 대한 논의의 시작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이 모임을 가질 때 상급관리를 시작으로 品階別로 북쪽에서부터 동쪽, 서쪽, 남쪽에 앉는 것이 常例였고, 중국 使臣과 접견할 때도 중국 사신이 북쪽에 앉고, 관리들은 품계에 따라 동쪽, 서쪽, 남쪽의 차례로 앉았다.⁵⁾ 다음 <그림 1>은 이 내용을 방위표를 이용하여 도형화시킨 것이다.



<그림 1> 조선시대 관리들의 일반적인 좌차규정

* 이 그림은 『經國大典』 禮典 京外官會座條를 참고로 만들었음.

* (N)은 북쪽, (S)는 남쪽을 나타내며, ①,②,③,④는 품계의 순서를 나타냄.

위의 좌차규정대로라면 수직여진인 및 중국의 관직을 받은 여진인도 당연히 그 품계에 따라 좌석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진인을 접견할 때 都觀察使·都節制使 등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고, 여진인은 비록 明 관직인 都督·指揮일지라도 모두 東·西로 나누어 앉아 그 품계에 따르지

5) 『經國大典』 禮典 京外官會座條.

않았다.⁶⁾

조선의 도관찰사, 도절제사는 그 품계가 중2품직이고, 명의 관직인 도독은 1품 또는 정2품, 지휘는 정2품에서 정4품까지를 나타내므로⁷⁾ 품계가 낮은 조선인 관리가 품계가 높은 여진인 명 관직자 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조선인 관리가 여진인을 만날 때에는 품계에 따르지 않고 조선인 관리가 항상 높은 자리에서 여진인을 접견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측에서 보면 여진인을 접견할 때 의도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채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에는 여진인을 대할 때의 관습이나 이들에 대한 인식도 조금은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여진인이 비록 중국 조정의 지휘·천호의 직책을 받은 자라도, 조선의 변방 고을의 관리가 例事로 접대할 때와 罪罰을 논할 때 벼슬 높은 것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官吏 뿐 아니라 居民들도 역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저쪽 아인도 역시 감히 벼슬 높은 것으로 맞겨루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굴복하는 것이 오랫동안 이미 풍속이 되어 있다”⁸⁾라는 기록을 보아도 조선에서는 여진인이 받은 관직의 품계에 상관없이 이들을 대할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433년(세종 15)에 있었던 한 사건은 여진인을 접견할 때의 座次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즉 해청을 잡기 위해 함길도로 온 중국 사신 尹鳳이 오도리의 首長 동맹가침목아를 동벽에 앉게 하고, 조선의 巡察使 등을 서벽에 앉게 하자, 순찰사 등이 앉지 않고 나가버린 일이었다.⁹⁾ 동맹가침목아를 동벽에 앉게 하고 순찰사 등을 서벽에 앉게 한 것은 순찰사 등을 동맹가침목아 보다 아래로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순찰사 등이 자리에 앉지 않고 나가버린 것이었다.

중국 사신 윤봉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동맹가침목아가 1품 또는 정2품인 도독첨사, 도독의 관직을 가지고 있으므로¹⁰⁾ 조선의 중2품직인 순찰사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여 동맹가침목아를 순찰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윤봉의 행동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조선측에서 보면 당시 윤봉의 행동은 아주 특이한 경우로, 세종은 이 일에 대하여 “나도 생각하기를, 저들이 비록 중국의 極品일지라도 野人이기 때문에, 중국이 童都督을 대우하는 지위가 우리나라 배신의 밑에 있으니 어찌 의미가 없을까”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중국에서는 극품의 아인일지라도 조선의 배신 밑에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¹⁾ 중국 사신 앞에서 여진인과 조선의 관리가 함께 참석할 때의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므로, 세종의 이 말은 중국 북경에서 여진인과 조선의 사신이 함께 조회에 참여할 때의 일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중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여진보다 조선을 우대하여 조선인 관리를 극품을 지닌 여진인보다 위에 자리매김 하고 있었던 것이다.

6) 『世宗實錄』 卷59, 15年 3月 癸酉.

7) 명의 관직 중 都督은 左都督, 右都督, 都督同知, 都督僉事로 나눌 수 있고 각 品階는 정1품부터 정2품까지이며, 指揮는 都指揮使, 都指揮同知, 都指揮僉事, 指揮使, 指揮同知, 指揮僉事로 나눌 수 있고 각 품계는 정2품부터 정4품까지이다.(『大明會典』 卷118.)

8) 『世宗實錄』 卷124, 31年 5月 戊申.

9) 당시 여진인에 대한 좌차규정은 조선의 관직을 받은 여진인 보다는 명의 관직을 받은 여진인에 대한 것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촉발된 좌차규정에 대한 논의는 이후 수직여진인에 대한 좌차규정의 시발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世宗實錄』 卷59, 15年 3月 癸酉).

10) 『世宗實錄』 卷51, 13年 2月 戊午; 卷61, 15年 7月 己未; 『世宗實錄』 卷59, 15年 3月 癸酉 등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동맹가침목아의 관직명은 도독첨사와 도독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11) 『世宗實錄』 卷59, 15年 3月 癸酉.

이 사건으로 諸臣들은 중국에서 여진을 대우하는 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여진을 대우하는 제도를 정하고 예조로 하여금 移文하여 邊將에게 알리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¹²⁾ 당시 새로운 좌차규정의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이 사건으로 여진인에 대한 좌차 규정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II. 『世宗實錄』에 나타난 座次規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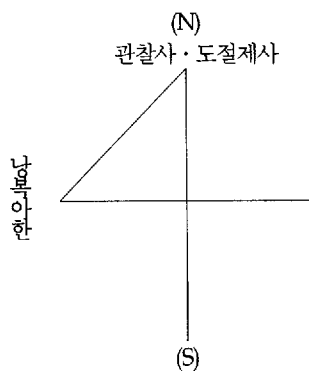
1433년(세종 15) 여진인의 좌차규정에 대한 논의 이후 『세종실록』에 나타난 여진인에 대한 좌차규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것은 8년 후인 1441년(세종 23)에 兀良哈 都指揮同知 浪卜兒罕이 내조하자 都萬戶를 제수하고, 지나가는 길의 각 고을 守衛 및 監司와 도절제사에게 낭북아한을 접대할 때의 좌차규정을 傳旨한 것이다. 두 번째 것은 그 다음해인 1442년(세종 24)에 함길도 관찰사의 關文에 의거하여 여진인을 접대하는 座次를 상정한 것이다.

우선 1441년(세종 23) 낭북아한에 대한 좌차규정을 살펴보면 크게 관찰사 및 도절제사 접견시, 二品 外官 접견시, 三品 以下の 수령 접견시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눈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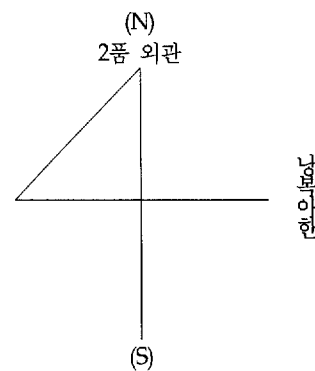
- ① 관찰사와 도절제사는 남쪽을 향하여 앉고 낭북아한은 서벽에 繩床¹³⁾에 앉으며,
- ② 2품 외관은 남쪽을 향해 앉고 낭북아한은 동벽 交椅¹⁴⁾에 앉으며,
- ③ 3품 이하의 수령은 손님은 동쪽, 주인은 서쪽으로 앉게 하고 변장일 경우는 주인이 동쪽, 손님이 서쪽에 앉게 하였다.¹⁵⁾

다음 <그림 2>는 1441년(세종 23) 낭북아한에 대한 좌차규정을 도형화시킨 것이다.

(사례① : 관찰사·도절제사 접견시)



(사례② : 2품 外官 접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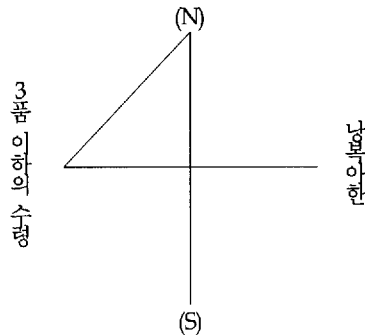
12) 『世宗實錄』 卷59, 15年 3月 癸酉.

13) 繩床은 노끈으로 엮어서 짚었다 꿇다 할 수 있게 만든 의자로 堂下官이 앉던 의자이다(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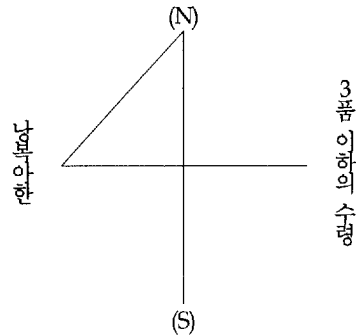
14) 交椅는 임금이나 堂上官이 앉았던 의자이다. 神主를 모시는 의자이기도 하였다(위와 같음).

15) 『世宗實錄』 卷94, 23年 10月 丙寅.

(사례③-1 : 3품 이하의 수령 접견시
- 邊將이 아닐 경우)



(사례③-2 : 3품 이하의 수령 접견시
- 邊將일 경우)



〈그림 2〉 1441년(세종 23) 浪卜兒罕에 대한 좌차규정

* 이 그림은 『世宗實錄』 卷94, 23年 10月 丙寅條를 참고로 만들었음.

관찰사·절제사가 종2품이고, 도만호가 종3품이기 때문에 사례①과 ②의 좌석배치는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는다. 품계의 고하에 따른 좌석배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 관직인 도지휘동지는 종2품이므로 이것 역시 품계에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북아한은 중국의 관직인 도지휘동지이든, 조선의 관직인 도만호이든 그 품계에 상관없이 사례①과 ②에서 조선의 관리인 종2품직보다 낮은 위치에 앉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사례①의 관찰사나 도절제사 또한 사례②와 같은 2품 외관이라는 점이다. 여기서의 관찰사나 도절제사는 함길도·평안도의 관찰사·절제사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여진인에 대한 군사적 위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변장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례②의 경우 따로 2품 외관이라 말한 것은 변장이 아닌 府尹¹⁶⁾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례①보다는 ②에서, 사례③-1보다는 ③-2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접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조선인 관리가 변장일 경우는 엄격한 좌차규정을 적용하여 변장과의 잦은 접촉이 발생하는 여진인으로 하여금 변장에 맞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모습이 이러한 좌차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¹⁷⁾

한편 사례③-1은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수직여진인이 조선인 관리보다 높게 자리매김 받은 것은 단지 이 경우 하나로 이후에 나타나는 1442년(세종 24)과 1472년(성종 3), 『경국대전』의 좌차규정에는 더 이상 이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主客을 설정하고 있어 남북아한을 상위에 위치시킨다고 보긴 어렵다.

다음으로 1442년(세종 24)에 함길도 관찰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여진인을 접대하는 좌차를 상정한 것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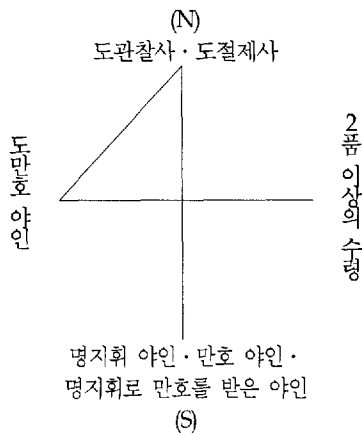
16) 여진인의 상경로에 위치하면서 종2품의 府尹이 있었던 곳은 威慶道에서는 威興府, 平安道에서는 平壤府, 義州府였다.

17) 특히 사례①과 ②에서는 남북아한이 앉는 의자도 정하였는데 사례①에서는 堂下官이 앉는 繩床을, 사례②에서는 堂上官이 앉는 交椅에 앉게 하여 관찰사·도절제사 접견시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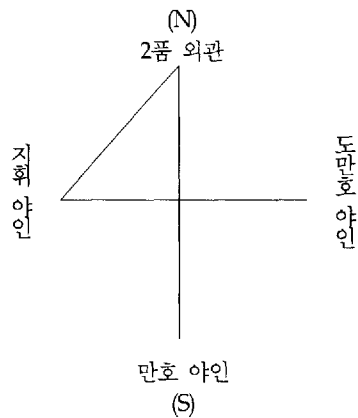
- ④ 都萬戶를 받은 野人은 도관찰사와 도절제사가 있는 곳에서는, 使는 남쪽을 향하여 交椅에 앉고 야인은 서벽의 繩床에, 二品 以上の 수령은 동벽의 交椅에 앉으며, 萬戶를 받은 야인은 坐席이 없고 적당하게 方席을 설치하고 대접한다. 中朝의 指揮 벼슬을 받은 야인은 이미 시행한 격례에 의거하여 남쪽 줄의 승상에 앉고, 만약 만호를 받은 야인이 자리에 참여하면 권도를 따라 또한 남쪽 줄의 승상에 앉고, 지휘로서 만호를 받은 사람은 지휘의 예에 의거하게 한다.
- ⑤ 2품 이상의 外官이 있는 곳에서는, 외관은 남쪽을 향하고 도만호는 동벽에 있되 모두 교의에 앉고, 지휘 벼슬을 받은 야인은 이미 시행한 格例에 의거하여 서벽의 승상에 앉고, 만호를 받은 야인은 남쪽 줄의 승상에 앉게 한다.
- ⑥ 4품 이상의 邊將이 있는 곳에서는, 변장은 동벽에, 도만호는 서벽에 있되, 모두 교의에 앉고, 만호를 받은 야인과 지휘 벼슬을 받은 야인은 모두 남쪽 줄의 승상에 앉고, 만약 도만호가 없으면, 변장은 남쪽을 향하여 교의에 앉고, 지휘 벼슬을 받은 야인과 만호를 받은 야인은 모두 서벽의 승상에 앉게 한다.
- ⑦ 3품 이하의 守衛이 있는 곳에서는, 수령은 서벽에, 도만호는 동벽에 있되, 교의이면 주인과 손님이 모두 교의에 앉고, 승상이면 주인과 손님이 모두 승상에 앉으며, 만호를 받은 야인과 지휘 벼슬을 받은 야인은 모두 남쪽 줄의 승상에 앉게 한다. 만약 도만호가 없으면, 3품의 외관은 남쪽을 향하여 교의에 앉고, 만호를 받은 야인은 동벽의 승상에 앉고, 지휘 벼슬을 받은 야인은 서벽에 앉는다.
- ⑧ 4품 이하의 외관이면, 수령은 동벽에, 만호를 받은 야인과 지휘 벼슬을 받은 야인은 모두 서벽에서 교의와 승상에 앉되, 주인과 손님이 같게 한다.¹⁸⁾

위를 보면 1442년(세종 24)의 좌차규정은 크게 도관찰사·도절제사 접견시, 2품 外官 접견시, 4품 이상의 邊將 접견시, 3품 이하의 守衛 접견시, 4품 이하의 외관 접견시의 5가지로 나눈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3>는 세종 24년의 좌차규정을 방위표를 이용하여 도형화시킨 것이다.

(사례④ : 도관찰사·도절제사 접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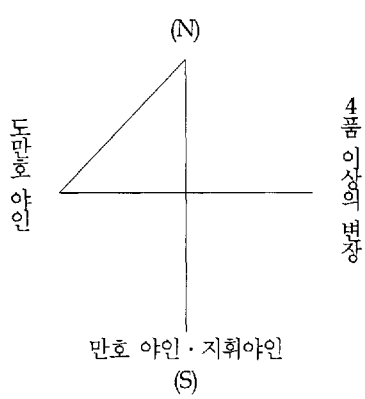


(사례⑤ : 2품 外官 접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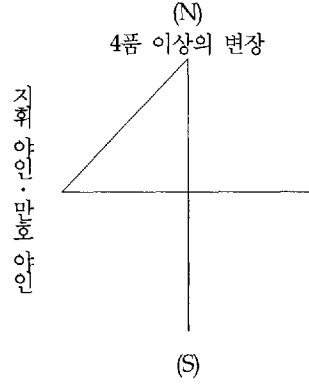


18) 『世宗實錄』 卷98, 24年 10月 壬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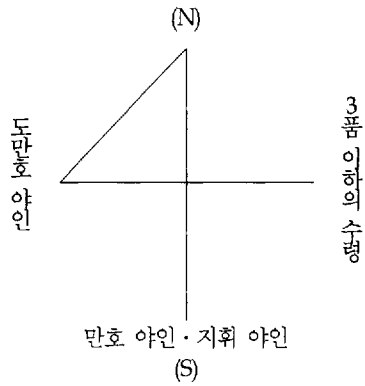
(사례⑥-1 : 4품 이상의 邊將 접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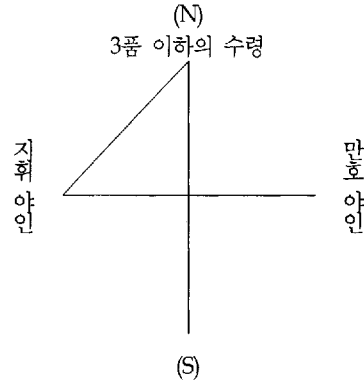
(사례⑥-2 : 4품 이상의 邊將 접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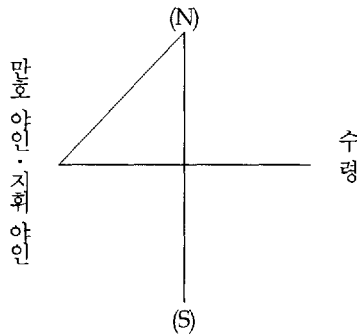
(사례⑦-1 : 3품 이하의 守令 접견시)



(사례⑦-2 : 3품 이하의 守令 접견시)



(사례⑧ : 4품 이하의 外官 접견시)



〈그림 3〉 1442년(세종 24) 여진인에 대한 座次 규정

* 이 그림은 『世宗實錄』 卷98, 24年 10月 壬子條를 참고로 만들었음.

1442년(세종 24)의 좌차규정도 전년도 낭북아한의 좌차규정에서 적용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기본적인 것은 변장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 사례④보다는 사례⑤가, 사례⑥-1보다는 사례⑥-2가, 사례⑦-1보다는 사례⑦-2에서 여진인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좌석을 배정 받았다. 또한 변장이 아닌 경우에도 主客을 설정하여 품계가 낮은 조선인 관리라 하더라도 더 높은 위치에 자리매김을 시키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사례⑤, ⑦-1, ⑦-2, ⑧).

그러나 1442년의 좌차규정은 전년도에 비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조선의 관직을 받은 여진인뿐 아니라 명관직을 가진 여진인에 대해서도 각각의 사례별로 그 자리매김을 달리한 것이다. 사례④~⑧에 나타나는 여진인 관직명은 조선의 都萬戶, 萬戶이고, 明의 指揮이다. 또한 이들 중에는 지휘로서 만호를 받은 사람도 있어서, 명과 조선 양쪽에서 관직을 받은 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에서 이들에 대한 접대 중 하나인 접견시의 좌석배치에 관한 사항까지 정비한 까닭은 그만큼 이들과의 교류가 많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여진과의 교류는 주로 여진의 조선에의 入朝와 朝貢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선에 입조하여 조공을 하였던 여진족은 주로 吾都里·兀良哈·兀狄哈·土着女眞이었다.¹⁹⁾ 이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것, 특히 그들이 필요로 하는 物化를 구입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諸女眞 세력들이 來朝한 회수는 14~15세기(성종대까지)에 걸쳐 각각 오도리 240회, 울랑합 411회, 울적합 406회, 토착여진 16회, 모두 합치면 총 1,073회나 되었다.²⁰⁾ 여진에 대한 관직 수여 또한 여진인의 입조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세종대까지 수직을 받은 여진인은 190여 명에 이른다.²¹⁾

조선뿐만 아니라 明도 요동에 거주하는 여진 초무에 적극적이어서 1447년(정통 12, 세종 29) 184개의 여진 衛所가 설치되었다.²²⁾ 명에서는 여진에 대한 위소 설치 이후 여진의 조선 入朝와 受職 등을 막으려 하였으나, 지리·경제적 특성상 여진과 조선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다. 明의 위소 가운데 조선에 입조하였던 위소는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79衛였고, 이것은 요동 지방에 설치된 전체 184衛 중 약 43%가 조선에 입조한 것을 말해준다.²³⁾

따라서 여진인을 ‘都萬戶野人’, ‘萬戶野人’, ‘指揮野人’, ‘明指揮로 萬戶를 받은 野人’ 등으로 구분한 1442년(세종 24)의 좌차규정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후에 나오는 성종대의 좌차규정 또한 당시 요동 지역에서의 명·조선·여진과의 관계 변화를 반영하면서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까지 성문화되었다.

19) 孫進己는 ‘女眞’이란 단어는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요구되는데, 협의의 여진이란 金나라 때 여진의 후예로서 주로 지금의 吉林省 및 黑龍江省 남부에 분포되어 있던 이들을 지칭하며, 광의의 여진이란 兀良哈·兀狄哈 등 허다한 민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明代 여진의 3구분법인 建州女眞·海西女眞·野人女眞은 민족공동체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지역적인 구분이므로 대단히 비과학적이며, 『朝鮮王朝實錄』에서는 통상적으로 여진종족을 兀良哈·吾都里·兀狄哈·忽刺溫·女眞의 5종으로 나누었다고 하고, 여기에서의 여진은 바로 협의의 여진이라고 하였다.(孫進己, 『東北民族原流』, 東文選, 1992, 345~349쪽.)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忽刺溫을 兀狄哈로 칭하고 있어 본문에서는 4종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20) 朝貢을 위해 入朝하는 여진인의 규모는 20~30여 인이었으나 많을 때는 50~60여 인이나 되었다.(金九鏡, 「여진과의 관계」, 『한국사22-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1995, 350~351쪽.)

21) 韓成周, 「조선초기 受職女眞人 연구-세종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36, 2006.

22) 南義鉉, 「明代 遼東都司 支配의 限界에 관한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86쪽.

23) 金九鏡, 「여진과의 관계」, 『한국사22-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1995, 349쪽.

Ⅲ. 『成宗實錄』과 『經國大典』에 나타난 座次規定

여진인에 대한 좌차규정은 1442년(세종 24) 이후 30년이 지난 1472년(성종 3)에 다시 한번 나타났는데, 1472년의 좌차규정은 특별한 변화 없이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다. 1472년(성종 3)의 좌차규정과 『경국대전』에 보이는 좌차규정은 동일하며 8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크게 다섯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節度使·觀察使 접견시, 두 번째는 堂上官 이상의 守令 접견시, 세 번째는 非堂上官 守令 접견시, 네 번째는 邊鎭의 判官 접견시, 다섯 번째는 虞侯 접견시가 그것이다.²⁴⁾

1472년(성종 3)과 『경국대전』에 보이는 좌차규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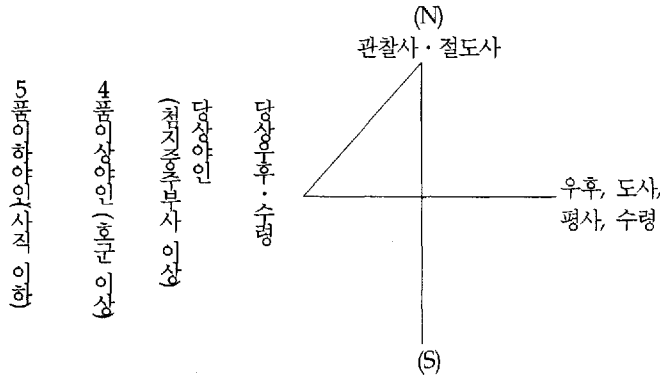
- ⑨ 1. 節度使는 北壁 交倚에 앉고, 堂上官 이상의 虞侯·守令은 西壁 앞줄 교의에 앉으며, 堂上 이상의 野人은 서벽 뒷줄 繩床에 앉고, 堂上官이 아닌 우후·評事·수령은 동쪽 기둥 밖의 남쪽 줄 승상에 앉으며, 4품 이상의 야인은 서쪽 기둥 밖의 남쪽 뒷줄 승상에 앉고, 5품 이하의 야인은 남쪽 뒷줄에 平排하여 앉는다.
 - 1. 觀察使는 節度使와 같다.
- ⑩ 1. 堂上官 이상의 守令은 북벽 교의에 앉고, 堂上官 이상의 야인은 서벽 승상에 앉으며, 判官은 동쪽 기둥 밖의 남쪽 줄 승상에 앉고, 4품 이상의 야인은 서쪽 기둥 밖의 남쪽 뒷줄 승상에 앉으며, 邊將이 있지 않은 곳이면 서벽에 앉는다. 5품 이하의 야인은 남쪽 뒷줄에 平排하여 앉고, 邊將이 있지 않은 곳이면 승상에 앉는다.
- ⑪ 1. 堂上官이 아닌 守令은 守令이 동벽에 앉고, 堂上官 이상의 야인은 서벽에 앉되, 모두 승상에 앉으며, 4품 이상의 야인은 남쪽 줄 승상에 앉고, 邊將이 있지 않은 곳이면 조금 뒤로 하여 서벽에 앉는다. 5품 이하의 야인은 남쪽 뒷줄에 平排하여 앉고, 邊將이 있지 않은 곳이면 승상에 앉는다.
- ⑫ 1. 邊鎭의 判官이 홀로 야인을 만날 때에는 堂上官이 아닌 守令의 例에 의한다.
- ⑬ 1. 우후가 홀로 야인을 만날 때에는 堂上官 이상의 守令의 例에 의하고, 堂上官인 守令은 벽의 앞줄 교의에 앉는다.
 - 1. 우후가 각 고을을 巡行할 때에는, 우후는 동벽에 앉고, 堂上官 이상의 守令은 서벽에 앉되, 모두 교의에 앉으며, 3품 이하의 守令은 남쪽 줄 승상에 앉는다. 堂上官 守令이 없으면 우후는 북벽에 앉고, 守令은 서벽에 앉는다.
 - 1. 우후가 비록 堂上官이라 하더라도 평시에 節度使나 兼節度使가 앉아 있는 곳에서는 남쪽 줄 승상에 앉되, 都事·評事도 같다.²⁵⁾

24) Ken Robinson은 1472년(성종 3)의 좌차규정을 8분류라고 말하고 있지만(Ken Robinson, 「朝鮮王朝-受職女眞人の關係と'朝鮮」, 『歴史評論』 592, 1999.), 이것은 크게 5가지 경우라고 보아야 하며 관찰사·절도사를 분리해 보아도 6가지 경우이다. 또 8조목의 마지막 2조목은 여진인에 대한 좌차규정과는 상관없고 虞侯와 外官과의 좌차규정이다. 상호비교 하고자 본고에서는 마지막 2조목까지 게재하고 사례로는 포함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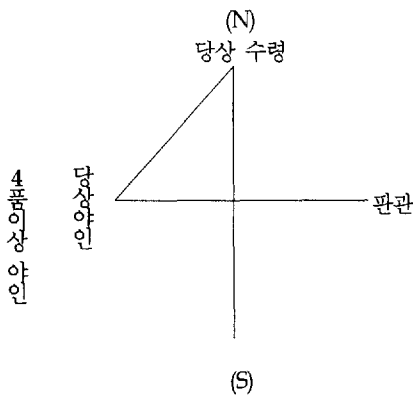
25) 『成宗實錄』 卷16, 3年 3月 丙午

다음 <그림 4>는 1472년(성종 3)과 『경국대전』에 나타난 다섯 가지 사례를 도형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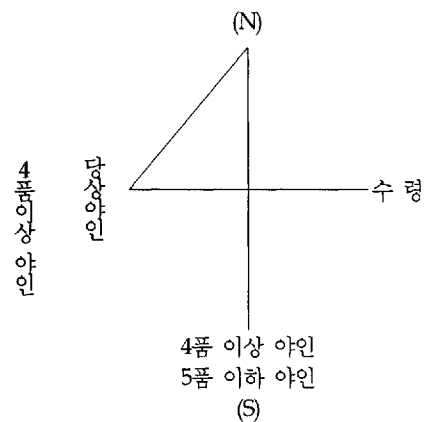
(사례⑨ : 관찰사·절도사 접견시)



(사례⑩ : 堂上 守丞 접견시)



(사례⑪ : 非堂上官 守丞 접견시)



<그림 4> 1472년(성종 3)과 『경국대전』에 나타난 座次規定²⁶⁾

(사례⑫ : 邊鎭의 判官 獨見時 - 사례⑪ 非堂上官 守丞 접견시와 동일)

(사례⑬ : 虞侯 獨見時 - 사례⑩ 堂上 守丞 접견시와 동일)

* 이 그림은 『성종실록』 권16, 3년 3월 병오조와 『經國大典』 禮典 京外官會座條를 참고로 만들었음.

1472년(성종 3)과 『경국대전』에 보이는 좌차규정을 세종대의 좌차규정과 비교해보면 그 형식과 내용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세종대에 중시되던 邊將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예는 사라지게 되

26) 『성종실록』에서는 각 조목별로 구분하여 기재가 되어있고 『경국대전』에는 조목구분은 없으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 또한 『성종실록』에서는 단순히 '堂上以上野人', '四品以上野人', '五品以下野人'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경국대전』에서는 '당상이상야인-僉知中樞府事以上', '사품이상야인-護軍以上', '오품이하야인-司直以下'로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成宗實錄』 卷16, 3年 3月 丙午, 『經國大典』 禮典 京外官會座條). 따라서 <그림 4>에 나타나는 첨지중추부사, 호군, 사직의 관직명은 『경국대전』에 나타나는 관직명을 표기한 것이다.

었다. 세종대의 사례⑫의 경우만이 변장의 경우에 속하지만 이것 역시 사례⑪의 예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세종대의 좌차규정은 크게 보아서는 다섯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으나 실제로는 세 가지 경우로 더욱 단순해진다. 즉, 조선인 관리를 기준으로 삼아 節度使나 觀察使의 접견시, 堂上守令 접견시, 非堂上守令 접견시의 세 가지 경우이며, 이것은 <그림 4>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좌차규정 안에 나타나는 여진인의 관직명 변화이다. 세종대에는 都萬戶, 萬戶, 指揮, 指揮使, 萬戶를 받은 자의 4가지 경우가 나타난 반면 성종대에는 ‘堂上以上野人-僉知中樞府事以上’, ‘四品以上野人-護軍以上’, ‘五品以下野人-司直以下’의 3가지 경우가 보인다. 이것은 성종대의 좌차규정이 세종대에 비해 더 포괄적이면서도 단순화된 것을 보여준다.

특히 세종대에는 보이지 않던 당상이상의 여진인의 존재는 비록 실직이 아닌 中樞院의 관직이더라도 여진인에 대한 수직이 당상이상의 職까지 확대된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성종대의 좌차규정에는 세종대에 보이던 도만호, 만호라는 地方軍官職은 보이지 않고, 호군, 사직이라는 中央五衛職의 관직명이 나타나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²⁷⁾

세종대에 보이던 指揮 등의 명 관직명은 성종대의 좌차규정에 오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데, 첫 번째는 조선측이 명 관직명을 의도적으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 명은 요동문제로 때문에 高麗를 견제하였고 그로 인하여 鐵嶺衛 설치문제, 李成桂의 威化島回軍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²⁸⁾ 조선 건국 후에도 生鬻3조, 侮慢2조의 문제와 表箋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조선을 압박하였다.²⁹⁾

그러던 중 명과 조선에서 각각 成祖와 太宗이 즉위하면서 명과 조선의 관계는 안정되어 갔으나 여진을 서로 초무하고자 하여 명과 조선의 긴장관계는 계속 남아있었다.³⁰⁾ 명 성조는 조선 동북면 11처에 거주하는 여진인을 명에 귀속시키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회령에 거주하던 오도리족의 수장 동맹가 침묵아를 명에 입조시킴으로써 여진을 초무하고 여진 지역에 위소를 설치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조선은 세종대 즉 4군 6진 설치 후 2차례에 걸친 여진정벌과 두만강·압록강 江外 거주자 및 명관직 보유 여진인에 대한 수직정책의 확대 등을 통하여 여진인들을 복속시키게 되었던 것이다.³¹⁾

그러나 명은 생흔3조에서 보듯 처음부터 조선과 여진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을 견제해 왔다. 조선에서도 명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노력하여 여진인들이 내조할 때는 중국사신이 다니는 평안도의 역로로는 다니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함경도의 역로를 통해서만 來朝하게끔 하였다. 결국 세종대에 시작된 명관직 여진인들에 대한 조선관직의 수여는 세조대에 와서 명과의 외교적 마찰로 비화되었다. 즉 세조가 建州左衛都督 童山이 조선에 내조하자, 정헌대부중추원사라는 관직을 제수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명은 勅使를 파견하여 조선의 행동을 힐책하였다.³²⁾ 이 때문에 조선은 명관직을 가진 여진인

27) 이러한 변화는 조선과 여진과의 관계 변화 및 중앙군과 지방군의 편제·변화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측되지만, 受職女眞人の 관직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8) 南義鉉, 「明 前期 遼東都司와 遼東八站占據」, 『명청사연구』 21, 2004, 11~16쪽.

29) 朴元燾, 「明初 朝鮮의 遼東攻伐計劃과 朝鮮表箋問題」, 『백산학보』 19, 1975.

30) 朴元燾, 「永樂年間 明과 朝鮮間의 女眞問題」, 『아세아연구』 85, 1991.

31) 韓成周, 「조선초기 受職女眞人 연구-세종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36, 2006.

32) 『世祖實錄』 卷14, 世祖 4年 10月 辛未; 卷16, 世祖 5年 4月 己未.

들의 직접적인 내조는 잠시 중단하였지만 변경에서의 교섭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렇듯 明은 조선 건국전부터 조선과 여진이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견제하고 있었다. 조선 초기 조공책봉을 전제로 한 명과의 사대관계가 완성되어가면서 조선은 명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종대에 이르러 좌차규정에서 明관직 여진인에 대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요동지역의 정세변화로 인하여 明 관직 여진인의 수가 감소하거나 또는 조선의 관직을 가진 여진인이 급증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명의 여진초무는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동남방향으로 나아가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여진을 초무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북으로 올라가 黑龍江 유역의 여진을 초무하는 것이었다.³³⁾ 전자는 조선의 강력한 반대속에서도 會寧에 거주하는 오도리의 수장 동맹가첩목아를 내조시켜 건주좌위를 개설함으로써, 후자는 흑룡강 하류의 元代 東征元帥府 자리에 奴兒干都司를 설치하고 이 지역의 여진 위소를 그 지배체제 안으로 편입 시킴으로써 일단락되었다고 생각된다.

요동지역에 설치된 이들 여진 위소는 기존 明의 위소체제와는 다른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즉 이들 여진 위소는 羈縻衛所로서 명의 관원이 파견되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진 추장들을 명의 위소 관원으로 임명하였고, 이들의 위소관직은 세습되었다. 또한 明朝는 이들에게 祿俸을 주지 않고 賞賜만을 주었으며, 朝貢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들과 무역하였다. 결국 이들 여진위소는 외형상으로는 여진 추장들이 명의 관원이 됨으로써 명의 지배체제 안으로 편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자적인 세력을 그대로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³⁴⁾

그러나 명이 성조 사후 대외확장정책을 축소 조정하여 북방민족에 대해 군사행동을 절제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하고, 북방의 몽골세력이 다시 강성해지면서 요동지역의 정세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오이라트의 잦은 내침이 있었던 明 英宗대에 이르게 되면 노아간도사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는데, 이것은 명의 방어체제가 흔들림으로 인하여 명이 더이상 요동지역의 여진위소를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해준다. 세종대 조선의 4군 6진의 설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요동지역의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아울러 4군 6진의 설치 이후 明 관직 보유 여진인 및 두만강·압록강 이북에 거주하는 여진인에 대한 수직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정세변화가 반영된 것이다. 조선의 수직정책의 확대로 말미암아 여진인으로서 조선의 관직을 수여받은 여진인들이 급증하여 장백산 동서지방에 있던 여진의 추장으로서 조선의 職牒을 받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였으며 세종대에는 여진과 더욱 활발히 교섭하여 평안도의 교통로를 개방할 정도였다.³⁵⁾

따라서 요동지역에 있어 명 관직을 가진 여진인의 수가 감소하거나 또는 조선관직을 가진 여진인의 증가로 인하여 명 관직 보유 여진인의 교섭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성종실록』에는 指揮 등의 관직을 가진 여진인의 來朝는 10여 회의 기록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성종대 여진인이 내조한 횟수인 371회와 비교해 보아도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관직 여진인에 대

33) 朴元燾, 「15세기 동아시아 정세」, 『한국사 22-조선왕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1995, 262쪽.

34)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2004, 530~539쪽.

35) 曹永祿, 「入關前 明·鮮時代の 滿洲關係史」, 『白山學報』 22, 1977, 28~30쪽.

한 대우 규정은 그 중요성이 감소하였으며 좌차규정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종합해보면 좌차규정의 변화 속에 나타난 여진인 관직명의 변화는 의도적인 것이든지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즉 명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명 관직명을 제외했을 수도 있고, 또 단순히 이들 명 관직 여진인들의 조선과의 직접적인 교섭 감소가 원인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는 조선과 명 양쪽으로부터 대량의 관직을 받은 이중관직자인 여진인들이 명과의 교섭시에는 명의 관직을, 조선과의 교섭시에는 조선의 관직을 이용해서 교섭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리고 어쩌면 조선의 여진에 대한 대량 수직으로 인해 조선측과의 교섭에 있어 명의 관직명은 점차 불필요해져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맺음말

朝鮮 건국 후 太祖 李成桂는 授職制度를 적극 활용하여 女眞人들을 조선에 회유, 복속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世宗代를 거치면서 수직여진인은 급증하기 시작하였는데, 세종대부터 이들에 대한 대우 규정들을 정비해 가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1433년(세종 15)부터 시작된 여진인의 接待時 座席配置에 대한 논의는 1441년(세종 23)과 1442년(세종 24)의 규정들을 거치면서 구체적이고 세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472년(성종 3)을 거치면서 『經國大典』에 명문화되게 되었다.

조선시대 官吏들은 일반적으로 상급관리부터 品階別로 북쪽에서부터 동쪽, 서쪽, 남쪽에 앉는 것이 常例였고, 中國 使臣을 접견할 때도 중국 사신이 북쪽에 앉고 조선의 관리들은 품계에 따라 동쪽, 서쪽, 남쪽의 차례로 앉았었다. 그러나 조선인 관리가 여진인을 만날 때에는 여진인의 품계에 구애받지 않고 조선인 관리가 항상 높은 자리에서 여진인을 接見하였다. 그런데 1433년(세종 15)의 중국 사신 尹鳳이 여진인을 조선 관리보다 높이 앉게 한 사건은 조선으로 하여금 여진인에 대한 座次規定을 정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여진인에 대한 좌차규정은 1441년(세종 23)과 1442년(세종 24)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전자는 중국 관직인 都指揮同知로서 조선에 來朝하여 都萬戶를 받은 浪卜兒罕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여진인에 대한 일반적인 좌차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전자가 낭복아한 1인에 대한 것이었던데 반해 후자는 ‘都萬戶’, ‘萬戶’, ‘指揮’, ‘指揮로서 萬戶를 받은 자’에 대한 규정을 달리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된 형식과 원칙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은 여진인이 朝鮮 또는 明에서 받은 관직의 품계가 조선인 관리보다 높다 하더라도 조선인 관리보다 낮게 위치시키는 원칙이다. 특히 1441년과 1442년의 좌차규정은 조선인 관리가 邊將일 경우 일반관리가 여진인을 접견할 때보다 더 낮은 위치로 여진인을 자리매김 시켰다. 또 일반관리일 경우에도 여진인의 품계가 높다 하더라도 조선인 관리는 主, 여진인은 客으로 설정하여 여진인들을 낮은 위치에 앉게 하였다.

한편 조선이 이들에 대한 접대 중 하나인 접견시의 좌석배치에 관한 사항까지 정비한 까닭은 그만큼 이들과의 교류가 많았던 것을 반증하고 있다. 조선 成宗代까지 여진인이 入朝한 회수는 무려 1,073 회이고, 세종대까지 조선의 관직을 받은 여진인의 수는 190여 명에 이르렀다. 明에서도 여진 招撫에 적극적이어서 1447년(정통 12, 세종 29)까지 총 184개의 여진 衛所를 설치하였는데, 세종대의 좌차규정에 ‘都萬戶野人’, ‘萬戶野人’, ‘指揮野人’, ‘明指揮로서 萬戶를 받은 野人’ 등이 나타난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및 明·朝鮮·女眞과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종대 이후 30여 년이 지난 1472년(성종 3)이 되면 여진인에 대한 좌차규정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 이 1472년의 좌차규정은 『경국대전』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다. 이때의 좌차규정 역시 세종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인 관리가 품계에 구애받지 않고 여진인보다 항상 높은 자리에 앉게 하였다. 그러나 세종대에 있었던 변장과 일반관리의 구분, 主客의 설정 등은 사라지고, 조선인 관리를 기준으로 삼아 節度使 및 觀察使 접견시, 堂上官 以上の 守令 접견시, 非堂上官 守令 접견시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이전의 좌차규정보다 포괄적이고 단순화시켰다.

여진인의 官職명이 나타나는 것도 세종대와는 다르게 변화했는데, ‘堂上以上野人-僉知中樞府事以上’, ‘四品以上野人-護軍以上’, ‘五品以下野人-司直以下’의 3가지만이 보이게 되었다. 이것을 보면 세종대에 나타나던 명 관직명은 나오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조선이 明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건국 직후부터 明은 조선과 여진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을 견제해 왔으며, 조선과 여진이 사사로이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리·경제적 특성 및 북방의 방어를 위해서도 여진과의 교섭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은 세종대 4郡 6鎮의 설치 이후 두만강·압록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진인 및 明 관직 여진인에 대한 수직을 확대 실시하였는데, 世祖대에 이르러 建州左衛都督 童山에 대한 수직문제는 明과의 외교적 마찰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 보면 明과의 事大關係가 완성·정착된 시점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明 관직 여진인들에 대한 규정을 의도적으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로 明 관직을 가진 여진인의 수가 감소하거나 또는 조선의 관직을 가진 여진인의 증가로 인하여 明 관직 보유 여진인의 교섭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遼東은 明이 成祖 사후 대외정책에 있어 군사행동을 절제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북방의 몽골세력이 다시 강성해지면서 요동에서의 明의 방어체제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여진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오이라트의 잦은 침입이 있었던 明 英宗대에 이르러 黑龍江 유역에 설치하였던 奴兒干都司가 기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여진 衛所를 통솔할 수 없었다. 또한 조선의 4군 6진 설치 이후 조선과 여진의 교섭이 증가하고, 조선의 수직정책이 확대 실시 됨으로써 조선의 관직을 수여받은 여진인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요동지역에 있어 明 관직을 가진 여진인의 수가 감소하거나 조선 관직을 가진 여진인의 증가로 인하여 明 관직 보유 여진인의 교섭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조선의 성종 연간에 여진인의 내조는 371회나 되지만 明 관직을 가진 여진인의 入朝는 10여 회 밖에 는 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조선시대 受職女眞人에 대한 좌차규정을 살펴보았다. 座次規定은 여진인에 대한 待遇規定 중 하나인데, 여진인들이 조선에 來朝하였을 때에 조선인 관리와 수직여진인과의 좌석배치규정이다. 조선에서 이들에 대한 좌석배치에 관한 사항까지 정비를 하여 『經國大典』에까지 성문화시킨 것은 단지 이들과의 교류가 많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待遇와 接待에 만전의 준비를 하여 여진인들을 지속적으로 조선에 복속시키기 위해서였다. 세종대에 시작된 좌차규정에 대한 논의부터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좌차규정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品階에 상관없이 조선인 관리가 여진인보

다 높은 자리에 앉는 원칙은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시대 좌차규정이 생성·변화·완성되는 모습은 단편적이거나 당시 遼東지역의 정세변화와 明·朝鮮·女眞關係를 반영하고 있다. 즉 좌차규정속에 나타나는 여진인으로서 조선관직·명관직·조선 및 명 이중관직자의 존재는 15세기 명·조선·여진과의 관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論 文 摘 要

朝鮮建國後,太祖李成桂對女眞積極推行授職政策,從而把女真人怀柔、服屬於朝鮮。尤其,從世宗時期開始,授職女真人急增,從世宗代開始是對授職女真人待遇規定的整備時期。其中,從1433年(世宗15)開始接待女真人時,出現了座席配置的議論。1441年(世宗23)和1442年(世宗24),開始有了具體細致的規定。從此以後,經過1472年(成宗3)在《經國大典》上成爲明文化。

朝鮮時代官吏們一般按品級從上級官吏開始從北到東、西、南的順序入座是常例。接待中國使臣的時候,中國官吏坐北邊,朝鮮官吏是按品級順序入座在東、西、南邊。但是朝鮮人官吏接見女真人時,不管女真人的多大品級,朝鮮人常常在最高的座位上接見女真人。可是,1433年(世宗15),中國使臣尹鳳把女真人比朝鮮官吏入座之上的事件,使朝鮮對女真人的座次規定有了整備的契機。

以後,對女真人的座次規定再出現在1441年(世宗23)和1442年(世宗24),前者是對中國官職的都指揮同知來朝鮮授都萬戶的浪卜兀罕,後者是整備女真人一般座次規定。前者是對浪卜兀罕一人的,可後者是對“都萬戶、萬戶、指揮”、以指揮受萬戶之者等規定不同。可見,產生了更具體、細致的規定。但是,其主要形式和原則大體沒變,那是因爲女真人在朝鮮或從明授到的官職品級高于朝鮮人,可原則是在位置上低于朝鮮人官吏。特別是1441年和1442年的座次規定中,朝鮮人官吏要是邊將的時候,一般官吏接見女真人還要低的水准來規定女真人位置。另外,一般官吏的時候,雖然女真人品級高于朝鮮人,但主是朝鮮人客是女真人,女真人座位位置低于朝鮮人。

朝鮮接待女真人接見時,座席配置事項的整備,說明他們之間的交流很多。朝鮮成宗時代,女真人入朝的次數多達1073次,世宗時期爲止,授朝鮮官職的女真人的人數達190余名。明朝也是積極推行招撫女真人政策,1447年(正統12、成宗29)共設置了184個女眞衛所。世宗時期的座次規定中都萬戶野人、萬戶野人、指揮野人、以明指揮受萬戶野人的出現等都反映這個時期的狀況及明、朝鮮、女眞之間的關係。

1472年(成宗3),對女真人的座次規定又發生了變化。這一規定出現在《經國大典》的一樣。這時的座次規定同世宗時期一樣,朝鮮人官吏不受品級拘束,常常比女真人的地位高。但是,世宗時期,邊將和一般官吏的區分和主客的規定消失?,分爲朝鮮人的官吏爲基準接見節度使及觀察使時,接見堂上官以上的守令時,接見非堂上官守令時的三種情況,比以前的座次規定簡單化了。

女真人官職名的出現與世宗時期不同,產生了堂上以上野人-僉知中樞府事以上、四品以上野人-護軍以上、五品以下野人-司直以下等三個官職。從這裡可以看出,世宗時期出現的明朝官職不再出現了。對一間

題，可以做出如下几种推測，第一，朝鮮爲了与明朝不必要的摩擦，有意取消的可能性大。朝鮮建國後不久，明朝爲了牽制朝鮮和女真的密切關係，禁止朝鮮和女真私事接觸。但是，由于地理、經濟的特性及北方的防禦，避免不了与女真的交涉。朝鮮世宗時期設置4郡6鎮以後，在豆滿江、鴨綠江流域居住的女真人及對授職明官職女真人實施擴大，到世祖時期，對建州左衛都督童山的授職問題導致跟明朝的外交摩擦。所以從朝鮮方面看，同明朝的事大關係在完成、定着的視點來看，是避免不必要的摩擦的，對授明官職女真人的規定有意取消的可能性大。

第二，由于授明官職女真人的數減少或授朝鮮官職的女真人的增加，授明官職保有女真人的交涉相對的有了減少的可能性。當時，明成祖死后，對遼東實施的軍事行動採取節制、消极、防禦戰略的對外政策。北方的蒙古勢力重新強大起來，遼東的明朝防禦體制開始動搖。因此，對女真的影響力開始減弱，到了明英宗時期設置在黑龍江流域的奴儿干都司被廢止，失去了女真衛所的統率。另外，朝鮮設置四郡六鎮后，朝鮮和女真的交涉增加了，朝鮮擴大實施授職政策，授朝鮮官職的女真開始劇增。隨着遼東地域授明官職的女真人的數減少或授朝鮮官職的女真人增加，授明官職女真人的交涉有了減少的可能性。其實，朝鮮成宗年間，女真人來朝共有371次，可授明官職的女真人入朝僅10余次。

以上對朝鮮時代授職女真人的座次規定進行了探討。座次規定是對女真人的待遇規定中的一個，女真人對朝鮮來朝，對女真人的座席配置。在朝鮮，對女真人的座席配置的事項都整備之後，在《經國大典》上成文化是，不僅僅跟他們的交流頻繁，還有對他們的待遇和接待上的準備齊全，目的是使女真人不斷地歸屬於朝鮮。世宗時期開始的座次規定的議論，到成宗時期后，按時代座次規定有所不同，与其品級無關，朝鮮人官吏比女真人上座的原則是沒變。但是，朝鮮時代座次規定的產生、變化、完成的情況，在一定程度上反映了當時遼東地區的時勢變化和明、朝鮮、女真之間的關係。在座次規定問題上，女真人在朝鮮官職、明官職、朝鮮及明的二重官職者的出現，反映了15世紀明、朝、鮮、女真之間的關係。

主題語：朝鮮，明，女真，世宗，成宗，受職女真人，座次規定